

1. 우등생 표창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내규는 학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등생 표창을 실시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등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한 학생 중에서 다음과 같은 명칭으로 표창한다.

① 최우등생: 한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학과 학년에서 최우수인자. 다만, 평점평균이 4.0 이상이어야 대상이 됨. (2020.4.21. 개정)

② 우 등 생: 한 학기 성적 3.75 이상인자 중에서 학과 학년별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2020.4.21. 개정)

1. 정원 30명까지 : 1명

2. 정원 31명 이상 : 30명 초과마다 1명씩 추가

제3조 최우등생(우등생 포함)은 4학년 2학기 학생은 제외하며, 최우등 졸업생은 전기 졸업생에 한한다.

제4조 우등생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상한다.

제5조 우등생에게는 별지 서식의 표창장을 수여하며, 학적부에 기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